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1638
------------	------

2020년 9월 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0. 7. 6. 김상훈 의원 발의 (2020. 7. 8. 회부)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2조제2항제8호)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구분(안 제4조제1항)
- 입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정함 (안 제9조의2제1항)

-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0조제1항)
-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에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0조제1항)
-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안 제11조제5항)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27조제3항)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목적의 광고에 한해 보도 바닥에 조명 광고를 허용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규정 보완(안 제10조제1항제2호)”

- 법령 및 조례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에서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허용 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1) -----

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2. ----- 교통정보안내판(영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

-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승강장(버스,택시) 등의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되, 안전문화·재난상황 등을 알리는 재난문자전광판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붙임1).
- 이 조례에서 교통정보안내판은 ‘교통소통 정보 제공’을 염두에 두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시에 설치된 교통정보안내판 중에는 사망·부상 등의 안전문화·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



<안전문화·재난상황 정보 제공>



<교통소통 정보 제공>

1) 시행령 개정('19.4.)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붙임2)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소통 정보만 제공할 때 광고물을 표시토록 하여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교통정보안내판은 서울시(341개)²⁾ 및 서울지방경찰청이(21개)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여 안전문화·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업 광고를 운영하고 있어³⁾,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지방경찰청이 후속 조치를(교통정보안내판 존속 여부 등) 해야 할 것임.
-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서 허가기간 동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고(안 부칙 제2조) 교통정보안내판의 광고물 표시기간이 올해 연장되어 '22년까지 운영될 수 있으므로⁴⁾ 서울지방경찰청과 광고대행사 간의 협의 및 후속조치 시행에 기간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도로 바닥에 조명표시 허용(안 제10조제1항제4의2호 신설, 제20조제1항)”

- 현행 제도에서 도로 바닥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장소이나⁵⁾, 이 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보도를

2)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설치·운영하고, 광고 없이 교통소통 정보만 제공하고 있음

3) 선정된 광고대행사가 교통정보안내판 설치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대신, 일반상업광고를 운영(붙임3)

4) 1988년 최초설치 후 매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2020~2022)

5)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이 조례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추가하여 공공 목적의 광고는 보도 바닥에 조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집행부는 보차혼용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도 보도와 더불어 바닥 조명 광고를 허용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함⁶⁾.

현행	개정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신 설></u></p>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 -----.</p> <p><u>4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u></p>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 ----- -----.</p>

6)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歩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제10조제1항제4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 바닥 조명 광고는 레이저로 각인한 이미지를 LED 조명을 통해 바닥에 비추는 방식으로, 간판 등 다른 옥외광고물에 비해 설치가 쉽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은 있으나, 광원에 눈이 직접 노출되는 빛공해 문제를⁷⁾ 비롯해, 시시각각 변하는 시각적 자극으로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는 시각적 자극에 멈춰서거나 따라가는 행태가 있어 보행 안전성에 문제가 클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제도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조명의 상업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목적이라고는 하나 바닥 조명 허용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7) 바닥조명광고는 광원이 보행자에게 직접 노출되어(바닥조명광고를 쏘는 레이저 빔프로젝터를 올려다보면 광원에 눈이 직접 노출) 빛공해 및 시력 안전 문제 발생 가능
* 주로 업소 간판 옆이나 윗부분에 조명을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도로 바닥에 조명을 비춤

- 따라서, 바닥 조명 광고 허용에 관해서는, 통행의 안전성 및 빛공해 안전성 등이 충분히 숙고된 후 공공목적의 바닥 조명 광고의 표시 장소와 방법, 광원의 설치기준 등을 함께 조례 입법하거나, 이 개정조례안에서 재량규정으로 제시된 ‘바닥 조명 광고의 세부 기준 마련’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 외에 보차혼용이 많은 이면도로에도 바닥 조명 광고가 사용된다면⁸⁾, 보행자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예측불가능한 동작으로⁹⁾ 차량 운행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바닥 조명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장소는 특히 세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현재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로 바닥 조명 광고의 현황 파악(붙임4) 및 대책 마련도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음.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2항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제11조)”

- 시행령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의 광고물이 벽면 이용 간판에 추가된 사항과 ‘현수식’이 ‘매다는 방식’으로 용어 정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 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벽면 이용 간판 중, 차양면(캐노피)이 설치되는 주유소·가스충전소는 차양면에 표시하거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벽면 이용 간판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충전시설이 추가된 시행령 개정사항을(붙임5) 반영하여, 주

8) 집행부는 보차혼용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도 바닥 조명 광고 허용 의견을 제시함

9) 특히, 어린이가 바닥 조명 광고에 멈춰서거나 따라가는 행태

유소·가스충전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충전시설에도 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유사시설의 광고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② (본문 생략) 8.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② (현행과 같음) 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 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 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 2개 이내

참고로, '19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수소가스충전소가 3개소 설치되어 있음¹⁰⁾.

※ 수소가스 충전소 현황 (자료: 도시빛정책과)

- 수소차량 보급현황 : 전국 5,097대, 서울 683대 ('19년 12월말기준)
- 전국 충전소 운영현황: 31개소(상업용 29, 연구용 2)

전국	계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경남	부산	대전 충청	대구 경북
개소	31	3	5	1	6	3	5	2	4	2

○ 서울 충전소 현황

구분	위치	방식	운영	준공	운영시간	충전능력	안전관리자
상암 충전소	마포구	자체수소생산 (매립지 메탄 정제)	서울시	'10. 9.	24시간	30대/일 (6kg/대, 350기압)	4명
양재 충전소	서초구	튜브트레일러 공급	현대 자동차	'10. 3.	8시~21시	50대/일 (6kg/대, 700기압)	2명
국회 충전소	영등포구	튜브트레일러공급	현대 자동차	'19. 8.	8시~22시	50대/14시간 (3.3Nm ³ /h, 700기압)	1명

10) '20년에 강동 수소가스충전소 신규 설치

- 한편,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은 종전 시행령 해당 규정을 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붙임6) 특이사항 없음.

“기 타(안 제4조제1항제8호,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7조제3항)”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이용 간판은 자치구 옥외광고물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입간판 재료를 비철금속으로¹¹⁾ 규정하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것임.
- 이 조례에서,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30^{m²} 이상은 시심의를 받도록 하고 10^{m²} 이상은 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¹²⁾,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면적이 225^{m²} 이하의 대형 간판으로서 대부분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볼 수 있음.

11) 아크릴, 목재, 천종류 등

12)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규격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 다.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그러나, 벽면 이용 간판의 구심의와 관련된 조항에 사실상 서울시 심의대상이(이 조례 제4조제1항제4호)¹³⁾ 포함되어 있어, 이 개정조례안은 해당 사항을 삭제하여 서울시 심의사항과 자치구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행	개정안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u>제2호부터 제6호까지</u>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p> <p>----- ----- ----- -----.</p> <p>8. ----- --- <u>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u>----- ----- ----- ----- ----- ----- ----- -----.</p> <p>(현행과 같음)</p>

13)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중 합”

- 이 개정조례안은 주로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바닥 조명 광고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 일	rienrien@seoul.go.kr

<붙임 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4. 자동심장충격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붙임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4호, 2019. 4. 30., 일부개정]</p>
<p>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가. ~ 다. (생략)</p> <p>라. <u>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u> 다만, <u>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u></p> <p><신설></p> <p>2. ~ 5. (생략)</p>	<p>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 - - - .</p> <p>1. - - - - - .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u>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u></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이 13.5톤 이하 (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u></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u> 다만, <u>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붙임 3>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안내판 설치 현황 (자료: 도시빛정책과)

번호	관할구	허가 주무 부서		광고주	설치위치	지번
		광고물	도로점용			
1	강남구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동부화재	신사역 중앙녹지대	논현동 279
2			건설행정팀	현대해상	영동대교 남단	청담동 77-4
3	강동구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건설행정팀	1577-1577	올림픽대로 암사	암사동 553-1
4	강서구	도시디자인과	건설관리과	동부화재	김포공항 입구	공항동 6-12
5			점용허가팀	1577-1577	행주대교 남단	개화동 398-4
6	구로구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	1577-1577	오류IC진입로	개봉동 78
7	동작구	도시디자인과	건설관리과 점용관리팀	1577-1577	경문고 앞	사당2동 산1-7
8	서초구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현대해상	영곡동사거리	양재동 238
9			도로점용팀	1577-1577	한남대교 남단	잠원동 77
10	성동구	안전관리과	재무과 재산관리팀	삼성화재	금호터널앞	금호동3가 1583
11				삼성화재	동부간선 중앙녹지대	성수동1가 679(하)
12				1577-1577	용두동 내부순환로 입구	용답동 177
13	성북구	건설관리과	도로과 도로굴착팀	현대해상	미아사거리	길음동 15-3
14	송파구	주택관리과	도로과 건설관리팀	동부화재	잠실 고수부지 입구	잠실동 12
15	양천구	건설관리과	건설과 건설관리팀	1577-1577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신월동 837
16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	1577-1577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양평동3가 57-6
17			가로경관팀	1577-1577	인공폭포 앞	양화동 2-2(하)
18	용산구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팀	현대해상	강변북로 이촌동	이촌동 173-1(제)
19				현대해상	한강대교	이촌동 303-18
20				동부화재	한남대교 북단	한남동 138
21	중구	도시디자인과	가로환경과 도로행정팀	1577-1577	남산3호터널	회현동2가 49-11

<붙임 4> 자치구별 바닥 조명 설치 현황 (자료: 도시빛정책과)

(2020.02.21.현재)

(단위 : 개)

연번	구 별	설 치 주 체			
		계	공공용	상업용	
				860	658
				202	147
1	중 로 구	53	32	21	
2	중 구	46	41	5	
3	용 산 구	2	1	1	1
4	성 동 구	4	2	2	2
5	광 진 구	90	70	20	20
6	동 대 문 구	30	28	2	
7	중 량 구	72	66	6	6
8	성 북 구	5	2	3	
9	강 북 구	22	11	11	11
10	도 봉 구	44	37	7	14(신규 7)
11	노 원 구	62	60	2	2
12	은 평 구	2		2	2
13	서 대 문 구	10		10	
14	마 포 구	20	17	3	3
15	양 천 구	25	23	2	2
16	강 서 구	22	18	4	6(신규 2)
17	구 로 구	10	3	7	7
18	금 천 구	5	3	2	2
19	영 등 포 구	108	103	5	
20	동 작 구	76	64	12	12
21	관 약 구	19		19	19
22	서 초 구	15	13	2	2
23	강 남 구	19	16	3	3
24	송 파 구	24	6	18	
25	강 동 구	75	42	33	33

<붙임 5> 수소연료공급시설·충전시설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29714호, 2019. 4. 30., 일부개정]</small>
<p>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p>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p> <p>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u>현수식(懸垂式)</u>으로 표시하는 광고물</p> <p><신 설></p>	<p>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 - - -</p> <p>- - - - -</p> <p>1. - - - - -</p> <p>다.- - - - -</p> <p>- - - - -</p> <p>- - - - - 매다는 방식- - - -</p> <p>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 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 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붙임 6> 가로등 현수기 관련 시행령 개정과 이 조례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29895호, 2019. 6. 25., 일부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30324호, 2020. 1. 7., 일부개정]</small>
<p>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p> <p>① ~ ④ (생략)</p> <p>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p> <p>4. <u>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u></p>	<p>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 - - - <u>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u></p> <p><u><삭 제></u></p>

조례 현행	조례 개정안
<p>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p> <p><u><신 설></u></p>	<p>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p> <p>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u>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u></p> <p>2. <u>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u></p>